

아래 사항은 보험업법 제111조(대주주와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) 제3항, 보험업법시행령 제 5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-5조에 의한 공시사항입니다.

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
보험업법 제111조제3항과 제4항에 관련된 사항

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|
| 1. 대주주명 | | 동부자산운용(주) |
| 2. 신용공여내용 | 신용공여일 | 미정(2012년 6월말 인출예정) |
| | 신용공여종류 | 동부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0호 |
| | 신용공여금액(원) | 15,000,000,000 |
| | 신용공여총잔액(원) | 15,000,000,000 |
| | 만기일 | 인출일로부터 6년 후 |
| | 신용공여금리(%) | 5.65%(고정금리) |
| 3. 자금용도 | |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|
| 4. 이사회결의일 | | 2012년 6월 13일 |
| 5. 기타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건은 동부자산운용(당사의 계열회사)이 설정한 '동부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0호' 투자에 대한 공시입(대출 150억원, 수익증권 76억원) - 기타 투자 조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대출기간 : 인출일로부터 6년 ② 상환방법 : 만기일시상환 ③ LTV : 46%(150억원/326억원) ④ 신용보강 : 매입대상 부동산에 대한 1순위 담보권 설정 - 상기 수익증권 매입은 '약관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'에 해당되어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공시 예정 |